

# 홀에서 잠자다 대피못해

## 석유난로 과열로 출입구 막혀

- 인명피해 : 사망 5명
- 재산피해 : 4백71만원
- 서울 종로구
- 발화 : 84. 2. 29. 06 : 10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염이나 연기에 피난통로가 막혀 외부로의 탈출이 불가능한 고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1층이나 2층처럼 상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도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 화재는 1층에서 어떻게 5명이 사망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은 분식집의 출입구쪽에 피워둔 석유난로가 과열되면서 주위 가연물에 착화되어 홀내의 탁자, 의자, 가연성 간막이등을 태우면서 홀 전체로 확대되었다.

불이 나자 그 안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3명)과 이들의 친구(2명)등 모두 5명은 출입구가 막혀 반대쪽인 주방으로 대피했으나 비상구가 없어 모두 연기에 질식사, 사망한 채 주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불이 난 이 건물은 77년도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복합용도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93㎡)로서 1층은 분식집, 주점, 차고로 사용되어 왔다.

이 건물에는 소화기,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화재시 전혀 이용되지 못하였다.

이 불로 20㎡ 정도의 분식집이 전소되고 종업원등 5명이 사망하였는데 당 협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채순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망자 1인당 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 화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장에서는 취침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자와 탁자 등으로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홀에서 잠을 자는 중에 화재가 발생,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둘째, 출입구 부근에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잠을 자면서도 화기관리가 부실하여 이것이 과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1층 일부를 막아 분식집으로 사용하면서 외부로 통하는 문을 하나 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고 화재로 이 출입구가 막혀 불가능하였다.

넷째,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은 뒤늦게야 불이난 것을 알아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소규모 건물로 소방방법 상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이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평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어 화재 초기에 경보를 발하였다면 대피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

5명이 시체로 발견된 주방

